

Termination of Contract (1) ;

건설계약의 해지 (1)

A : How would you define the **Termination of Contract** ?

B : Generally, the **Termination of Contract** can be defined as the state of non-performance of a contract based either on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on specific conditions of contract. However.

A : Are there any precautions for a party who exercises the right of **Termination of Contract**?

B : Using the right of termination can be a risk if it turns out to be a breach of contract. Therefore caution must be used because exercising termination right might bring forth a counterclaim by the other party.

A : 건설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정의하여 주시겠습니까?

B : 건설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으로 말해 계약 미이행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특정 계약조건에 따라 행하여집니다. 하지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.

A : 계약해지권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?

B : 계약해지 권한의 행사는 때에 따라 하나의 위험 요소 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행사가 또 다른 형태의 계약위반 일 수 있으니까요. 따라서 타방 당사자의 역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
(1) "exercise"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(타동사)로도 쓰인다 : 권리의 행사(명사), 권리를 행사하다(동사)

(2) "use"도 "exercise"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.

(예) Land-use planning is a valid use of police power.

(토지이용계획은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다.)